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방보안지원단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보안지원단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계획에 따라 군사보안에 관한 감사 및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보안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운영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군 보안지원 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의 범위와 권한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직무에 대한 통제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보안감사, 신원조사,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사보안 관련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과 권한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직무수행 시 이의제기 절차, 정치적 중립의무 등의 권한과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직무 수행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체계를 제도화하고, 감찰기능 상시 유지 조치, 직원에 대한 인권지도 및 헌법가치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군 보안지원 기관이 민주적 통제 하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령의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법령 제정의 근거 법률과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조직개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나.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3조)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 및 법령 준수, 정치적 중립 유지, 권한 남용 금지, 기본권 침해 금지 등을 명시하여 정보활동의 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치관여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함.

다. 직무의 범위를 규정(안 제4조)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보안감사, 신원조사,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조사 등 세부 직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함.

라. 직무수행 시 이의제기 및 집행거부 규정(안 제5조)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함.

마. 자료의 제출 협조 요청 규정(안 제6조제1항)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임무수행 여건을 마련함.

바. 군 안보수사협의체 구성 근거 규정(안 제6조제2항)

군 수사기관 등과의 정보공유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하여 정보, 수사,

보안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보안기능과 수사기능 등 분리에 따른 우려를 해소함.

사. 조직 구성 규정(안 제7조)

단장, 감찰실장 등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아. 단장 등의 신분,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단장, 감찰실장 등의 신분, 임무를 규정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함.

자. 직원 인권지도 교육 의무 규정(안 제12조)

소속 군인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조직문화 차원의 인권 보호체계를 마련함.

차. 직원 헌법가치 교육 의무 규정(안 제13조)

소속 군인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시 헌법질서 존중, 기본권 보호 및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헌법가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직문화 차원의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방보안지원단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의 감사 및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보안지원단(이하 “보안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조직·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보안지원단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국방부장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3조(기본원칙) ① 보안지원단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보안지원단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과 군인등에 대한 정보 수집,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3. 군인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남용하는 모든 행위
4.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등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③ 제2항제1호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여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제4조(직무) ① 보안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규정」 제3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장비 등에 대한 보안감사
2. 「보안업무규정」 제4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통신수단 및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정보통신보안감사
3.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4.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지원
6.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7.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
8.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및 문서 등에 관한 보안 업무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의 범위는 국방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조회, 신원조사 등은 금지한다. 단, 부동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시 개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① 보안지원단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보안지원단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도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① 단장(제7조제2항에 따른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을 포함한다)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안지원단은 제4조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군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보수사협의체에 참여하고, 군 수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① 보안지원단에 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② 보안지원단에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며, 단장 소속으로 부대 및 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단장 등의 임명) ①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감찰실장은 군무원으로 보한다.

제9조(단장 등의 임무) ①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보안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찰실장은 보안지원단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③ 보안지원단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정원) 보안지원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 등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에 따른 보안지원단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인권지도 및 감독) 단장 및 소속 부서, 부대, 기관의 장은 군인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른 인

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헌법가치 교육) 단장은 소속 군인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6575